

# 수출입 정보

2019.06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Adinazolam 등 6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안)”

## 02. 수출입물류 동향

- 온라인 수출기업, 2022년까지 1만 5,000개社 육성

## 03. FTA 동향

- 한·말련 및 한·필리핀 FTA, 연내 타결 목표로 ‘동분서주’
- 올해 필리핀·인도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설치

## 04. 최신 품목분류

- 살짝 데친 홍합은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가?
- Plastic재질 상판과 Steel재질의 프레임이 결합된 가구가 분리되는 호는?”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88호, 2019.5.7>

### □ 개정사유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여 위반행위 자수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단속인력의 확충과 지자체의 원산지 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장판매 등을 공표대상에 추가하며,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을 추진함

### □ 주요 개정내용

- 시·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안 제7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자교육 등의 권한을 함께 부여
- 위반자 공표대상에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를 포함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9조)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공표 대상자에 혼동우려 표시자 및 위장판매자를 추가함
-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교육 추진(안 제9조의2)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내부감시 활성화(안 제19조)  
자수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55호, 2019.5.15.>

### □ 개정 사유

- '19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 □ 주요 개정 내용

- '19.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22개(1), 지정종료 4개(2) 및 신규지정 1개(3)  
(1) 냉동조기, 냉동꽃게, 염장새우, 돔, 미꾸라지, 가리비, 냉장갈치, 천일염(식용),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머장어,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참깨분, 땅콩, 도라지, 콩, 팥 : [지정기간] 2019.8.1.~2020.7.31.(1년)  
(2) 활새고막, 황금, 참깨, 비식용 대두유 : '19.7.31.만료  
(3) 활방어 : [지정기간] 2019.8.1. ~ 2020.7.31.(1년)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Adinazolam 등 6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59호, 2019.5.23>

###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Adinazolam 등 6종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1P-LSD 등 31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 예고함

### □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 구조적, 효과적 분류군/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부작용 및 유해사례/국내반입 유통 여부/국외유통 및 규제현황 고려하여 지정

###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Adinazolam, 3-HO-PCE 등 37개 품목의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W-18, Ethylphthalidate 등 65개 품목의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57호, 2019.5.23>

### □ 개정사유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 개정내용

○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제1항)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안 별표6)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안 별표 9)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별표 9)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63호, 2019.5.28>

### □ 개정사유

-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개정 (법률 제16105호, 2019.7.1. 시행)
- 일괄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업체 지정 등 세부 운영절차 마련
- \*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신용담보 등 일괄납부에 관한 사항 분리하여 별도 제정

### □ 주요 개정내용

- 무담보 원칙의 일괄납부업체 지정(§3)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는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신청 가능**하며,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요구
  - \* 종래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담보업체에 한해 담보제공 생략
- 일괄납부제도 이용 편의를 위한 업체 지원(§2, 별표1)
  - 일괄납부한도액 산출시 기초가 되는 “환급등 실적”에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양도세액 실적 포함(§2, 별표1)
  -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산출 시 환급실적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액 사용
  -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2년 주기로 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3②, §9)
  - \* 종래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2년, 지정기간 만료시 갱신 신청
  - 일괄납부한도액 조정 시 기존 설정된 한도액 유효기간 동안 사용(§6)
  -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시 별도의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기존의 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규정을 승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일괄납부한도액 일시정지, 직권정산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

## 02. 수출입물류 동향

“온라인 수출기업, 2022년까지 1만 5,000개社 육성”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해 재외동포 기업 등도 ‘전문무역상사’ 포함 예정”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두려움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000개社를 육성한다는 밑그림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 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을 5월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3월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온라인 수출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본격 추진, ▲한류 활용 신흥시장 진출지원 확대, ▲해외진출 방식 다각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식 전면 개편, ▲데이터 기반 정책 서비스 고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라인 수출 관련 생산·마케팅·판매·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투자·자금 지원 등 신규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000개社 육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통관물류센터 및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B2C 전자상거래는 다품종·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므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시엔 물류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부터 배송까지의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바코드에 HS 코드, 상품 페이지 및 이미지, 배송지 등의 정보를 담은 상품물류 코드로, 모든 수출과정 조회와 배송 추적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수출인력 양성과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중점대학 5곳을 시범 지정해 교육 실습과정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인센티브를 확대·신설하고, 올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재외동포·해외조달·전자상거래 기업도 전문무역상사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03. FTA 동향

## “한·말련 및 한·필리핀 FTA, 연내 타결 목표로 ‘동분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9일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美·中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언급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해 연내 타결 목표인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의 신속 타결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올해 필리핀·인도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설치”

##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수출애로 해결방안 논의”

정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업체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흥시장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지재권 분야 FTA 활용 지원 확대,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FTA 관련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진출한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를 올해 필리핀(마닐라, 6월), 인도(첸나이, 9월) 두 곳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5,000건 이상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본격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산물의 관세혜택, 검역 및 시장개척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출검사 절차를 완화하며, 가공, R&D 등 수출 지원 기능이 집적된 지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해 유망 품목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 중동시장을 목표로 할랄식품 인증 컨설팅과 新남방 지역에서 K-Pop·K-뷰티·K-푸드 로드쇼 개최를 추진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세관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04. 최신 품목분류

“살짝 데친 홍합은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가?”

“‘냉동한 홍합’으로 봐 제0307호로 분류할지, ‘조리한 홍합’으로 봐 제1605호로 분류할지?”

<물품설명>



한쪽 껍데기에 홍합이 붙어 있으며 조리돼 있지 않은 상태의 것

홍합 껍데기를 열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분사해 홍합을 데치거나 열처리해, 한쪽 껍데기는 버리고, 각각 홍합은 개별로 급속 냉동해 포장

○ 제0307호의 HS 해설서에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전복·수정고동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HS 위원회에서 데치는 공정은 초록입홍합 껍데기의 반쪽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열처리에 따른 단백질 조직의 변성은 없었고, 수입 후 추가로 조리해야 먹을 수 있다는 점과 데치는 공정이 ‘냉동 홍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처리 공정이므로 비록 제0307호의 용어에 ‘데치는 공정’이 없을지라도 ‘냉동 홍합’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최종 투표 결과, 일부 회원은 제1605호의 ‘조리된 홍합’으로 분류하는 의견에 손을 들었지만, **다수가 제0307호의 ‘냉동 홍합’으로 분류하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열처리의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 제0307호의 냉동 홍합으로 분류한 사례 : 한쪽 면 껍데기를 제거한 데친 홍합 1kg을 냉동한 후 수지백에 포장하고, 다시 종이 box에 소매 포장한 물품
- 제1605호의 조리한 홍합으로 분류한 사례 : 한쪽 껍데기가 제거된 페르나(Perna) 종의 홍합을 자숙 후 냉동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04. 최신 품목분류

“Plastic재질 상판과 Steel재질의 프레임이 결합된 가구가 분리되는 호는?”



<물품설명>

- HDPE(폴리에틸렌) 상판에 STEEL 재질의 Frame 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다리부분이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규격 : 753 × 524 × 660(mm)

**결정세번 : 제9403.70-9000호**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critoires)·서가·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본 물품은 HDPE, STEEL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테이블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닿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상판의 재질인 플라스틱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접이식 테이블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